

건설부문 투자 지원 방안

정부는 ‘건설부문 투자 지원방안’을 마련하고 지난 6월 13일 발표 했다.

이 지원 방안은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공공 및 민간부문의 SOC 투자 확대를 통해 건설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

또한 하도급업체에 저가수주 부담 전가를 방지하고 원·하도급자간 상생협력을 위한 하도급업자의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 마련이 있다. [편집자 주]



I.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

1. 국가계약제도의 전면 개선

건설산업의 기술개발 촉진,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「입찰 → 낙찰 → 시공 → 분쟁해결」 등 국가계약 전 과정 개선

① (입찰단계) 기술제안 허용확대,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검토

현 행	개 선
정부가 시공방법, 사용장비 등을 규정(물량내역서)하여 신기술·신공법을 적용하기가 곤란	시공방법 등의 대안 및 기술제안 허용 확대를 통해 민간의 창의적인 기술 활용 - 참여업체가 설계서분석 등을 통해 스스로 내역서를 작성하는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검토

② (낙찰단계) 최저가 낙찰제, 최고가치 낙찰제 확대

현 행	개 선
참여업체의 과거실적, 신용도 위주로 낙찰자를 결정함으로써 기술개발 저해 및 경쟁 제한	재정절감을 위해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하되, 랜덤마크가 되는 건축물 등은 기술력, 예술성, 사후운영비용 등을 감안하여 '최고가치 낙찰제' 확대 실시

③ (시공단계) 신기술 등의 활용을 통한 공사비 절감

현 행	개 선
시공자의 신기술·공법 제anyi 사업비 절감액의 70%를 보상하고 있으나 활용이 미미('80년 이후 5회 보상)	입찰자격심사(PQ), 낙찰자 결정시에도 신기술·공법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 방안 도입

④ (분쟁해결) 분쟁대상 및 조정기구 강화

현 행	개 선
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나 이용사례가 적고 유권해석 등에 의존하여 해결하는 실정	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민간 전문가 확대, 조정대상 확대 등을 통해 분쟁조정의 실효성 증진

⑤ (SOC 적기완공을 위한 민간 선투자 제도) 인센티브 제공 및 계약 근거 보완

현 행	개 선
장기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발생과 사업비 증가로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 모두 손해	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당해년도 예산외로 민간에서 선투자하는 것을 허용하고, 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

⑥ (하도급업자 보호) 제도적 보완방안 마련

현 행	개 선
저가수주 공사를 하도급업체에 전가하여 하도급업체 수익성 악화 * 원도급(종합건설업)과 하도급(전문건설업) 분리	하도급업체에 저가수주 부담 전가를 방지하고, 원·하도급자간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 마련

〈 추진 일정 〉

- 국가계약법 및 시행령 개정안 마련(~8.31)
- 국가계약법 개정안 국회 제출(~10.31)

2. SOC 적기완공을 위한 「민간 선투자 제도」 도입·실행

재정부족으로 공기지연 사례가 많은 국도, 철도공사 등에 '민간자금 차입을 통한 先시공'을 허용하여 공기 단축으로 정부와 시공사의 손실을 축소하고 지역주민 불편도 조기에 해소

① (제도 보완) 제도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법, 국가계약법 등의 개정 추진

- 공기단축에 따른 공사비 절감액(공사비 4~5%)의 일부를 총사업비에 반영하여 보상(총사업비관리 지침 개정)
- 민간시공사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공공보증(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¹⁾제도 적용 확대(민간투자법 개정)
-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계약근거 보완(국가계약법 개정)

② (대상사업 선정) 민간시공사의 선투자 의향이 있는 사업 중 조기완공 가능사업, 교통애로구간, 연속시공이 필요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대상 선정

- 금년에는 3,000억 수준의 초과시공 실시
 - 3천억 초과시공시 150억원 이상의 공사비 절감

효과 발생

- '09년에는 계속비 지정규모를 늘려 초과시공물량을 1조원 수준으로 확대 추진(구체적 규모는 시공사 등과 협의 결정)
- 계속비 대상을 일반국도 중심에서 철도 전반, 댐 건설 등으로 대폭 확대
- * 계속비 지정규모 : '08년 1.9조 → '09년 4~5조
- 다만, 동제도 도입시 SOC예산 증액 압력이 예상되므로 중장기 SOC 투자규모를 고려하여 사업규모를 적정 관리

〈 추진 일정 〉

- '08년 대상사업 선정(~5월말), 금년 초과시공 실시(6월부터)
- 총사업비 관리지침개정(~6.30), 민간투자법 개정(~7.31), 국가계약법 개정(~10.30)
- '09년 계속비 확대대상 및 규모 확정(~9.26)
- '09년 초과시공 대상·규모 확정(~09.3월)

3.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

건설 life-cycle(설계-계약-입찰-시공-감리)의 전 단계를 제로-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관련제도를 선진화

- 우리 건설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, 미래 성장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뒷받침

* 정책수요자인 민간전문가,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「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」를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마련

1)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

- 기능 : 민간투자사업(BTO, BTL) 자금 용자시 사업시행자의 신용보증
- 재원 : 정부출연금, 운용수익 등으로 조성(조성규모 : 3,224억원, 08.4월 현재)
- 보증한도 : 기본재산(3,224억원)의 20배 범위내

- ①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도록 건설관련 제도를 전면 재정비
 - (업종·업역) 기존의 겸업제한, 영업범위 제한 등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‘업종·업역 제도’를 합리적으로 개편
 - (계약, 입찰) 잦은 공사비 증액, 운찰제(運札制) 등의 비판이 있는 공공발주제도 개선 (국가계약법 개정시 반영)
 - (건설보증) 건설 보증기관의 경쟁력 강화, 신용평가방안, 부실업체 보증거부제도 도입 등
 - (R&D, 인력육성) 신기술·신공법 개발, 건설장비 개선, 인력 육성, 해외진출 지원 등
 - (고부가가치화) 설계·엔지니어링 분야 육성 등
 - (부패방지·투명성) 부실·불공정 등 부조리 관행 개선

〈 추진 일정 〉

- ‘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’ (기구성)에서 개선방안 마련(~9.30)
- 전문가·업계 의견수렴 및 부처 협의를 거쳐「건설산업 선진화 대책」 확정·발표(~12.31)
- 단계적으로 관련법(건설산업기본법 등) 및 시행령 개정(~09.상)

II. 공공 및 민간부문의 투자 확대

1. 공기업 SOC 투자계획 확대

- ① 주요 공기업의 내년도 사업물량을 금년에 앞당겨 투자(5조)

- 추가 투자분 5조원을 포함하여 금년 공기업 SOC의 총 투자규모는 52조원 수준이 될 전망
- * 공기업별 추가 투자규모 : 도로공사 1조, 주택공사 7,642억원, 토지공사 1.5조, 수자원공사 1,000억원, 철도시설공단 4,400억원 등

2. 사업비 절감액을 활용한 SOC 투자 확대

- ① 국토부, 공기업 등의 사업규모 조정, 시스템 정비 등으로 절감되는 금년 사업비 1.35조원을 SOC 사업에 투자
- * '08년 절감규모 : 국토부 5,123억, 도로공사 892억, 주택공사 1,752억, 토지공사 1,950억원 등

3. 주요 공공사업의 조기집행

- ① 금년 주요 공공사업 투자계획을 상반기에 6천억원 추가 집행*(총 8.7조원)하여 민간부문의 투자 확대를 견인
- * 4개 공기업(토공, 주공, 도공, 철도시설공단)의 주요 사업비 상반기 집행율이 69%가 될 전망
- ② 아울러, 금년분 공공건설 발주물량²⁾(국토부 소관 7.7조)을 상반기에 앞당겨 발주(기발주 6.6조, 추가발주 0.3조)하여 투자 활성화 분위기 조성
- * 상반기에 앞당겨 발주(입찰 등)할 경우 계약완료 및 사업 조기추진이 가능(금년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중)

2) 국토부 소관 공공사업 발주액 중 30억원 이상 사업 : 국토부 3.4조, 국토부 산하기관 4.3조

4. 민간투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

〈 BTL 추진 실적 〉

① (BTL : 임대형 민자사업³⁾) 민간 사업자의 애로를 적극 해소하여 금년 계획된 4.2조원 규모 BTL사업을 차질없이 추진

- 물가변동방식을 사전확정(통상 3%)에서 사후정산 방식으로 변경하여 원자재 가격 상승분 반영 ('08.5월 민투심 의결)

	'05	'06	'07	'08계획
고시규모	3.8조원 (86개)	7.2 (127)	5.5 (75)	5.0
민간투자	0.1조원	1.5	3.0	4.2

② (BTO : 수익형 민자사업) 금년 BTO사업은 3.3조 원 수준으로 전망



3) BTO와 BTL 비교

추진 방식	BTO(Build-Transfer-Operate)	BTL(Build-Transfer-Lease)
대상시설 성격	• 최종수요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SOC (예: 도로, 철도)	• 사용료가 무료 또는 염가여서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 (예: 사회복지시설)
투자비 회수	• 최종사용자의 사용료	• 정부의 시설임대료

- BTL사업은 투자비를 재정에서 보전하므로 사전에 BTL 한도액을 국회 보고

- * BTO 집행규모(조원) : ('06) 3.2 → ('07) 3.0
→ ('08 전망) 3.3
- 신규사업은 연내 착공을 위하여 사전준비 조기 추진
- * (예시) 광주~원주간 민자도로 연내 착공(당초 '09년 상반기 착공예정)
- 수도권 민자도로 등 새로운 민자사업을 추가 발굴

- ③ 「민자사업 추진점검 TF」를 운영하여 분기별 사업 진도를 관리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애로사항도 적극 해소
- * TF구성 : 재정부 예산실장(팀장), 국토부, 국방부, KDI 관계자 등 ●

III. 추진계획 (Action Plan)

구 분	실천과제	담당부처	추진 일정
제도개선	국가계약제도 전면 개선	기획재정부	개정안마련(~8.31) 법령개정(~10.30)
	SOC 적기완공을 위한 민간 선투자 제도 도입	기획재정부	대상선정(~5.31) 초과시공실시(6.1~) 민투법 개정(~7.30)
	건설산업 선진화 대책 마련	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	방안마련(~9.30) 의견수렴(~10.30) 대책발표(~12.31)
공공·민간 부문 투자확대	공기업의 SOC 투자 확대	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	사업실시(~12.31) 집행점검(9.30~)
	사업비 절감액 SOC 투자	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	사업선정(~6.30) 사업실시(~12.31)
	주요 공공사업 조기집행	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	상반기 조기집행 (~6.30)
	민자사업(BTO 등) 차질없는 추진	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	사업추진(~12.31) 분기별로 점검실시